

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

제정 2011. 12. 15 조례 제1197호
일부개정 2017. 10. 2 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 2017. 12. 11 조례 제174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,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업무추진비”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제3조(공개대상)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대상은 용인시의 시장, 제1부 시장, 제2부시장,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용인시의회의 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장 그리고 용인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의 장으로 한다. <개정 2017. 10. 2, 2017. 12. 11>

제4조(공개방법)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월 집행실적을 당월 15일 이전에 용인시, 용인시의회, 산하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제5조(공개내용) 업무추진비 공개는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한 집행일자(건별 구분), 집행목적, 집행대상, 집행금액으로 한다.

제6조(집행기준)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제1항에 따른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른다. <개정 2017. 12. 11>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⓪ 까지 생략

⑤❶ 「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⑤❷ 부터 ⑧❸ 까지 생략

부칙 <2017. 12. 11 조례 제174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